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[부과취소 및 변경]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1. 납세자: \*\*\*
2. 부과취소사유: 타시군 과오납 (양평군청 세무과-19694/ 2015.10.15)
3. 건수 및 세액(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)

(단위: 원)

건 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23,654,200	23,654,200	0

- 붙임 1. 부과취소결의결정서 1부.  
 2. 지방소득세(종합소득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  
 3. 세무서통보자료 및 주민등록등본 등. 끝.

주무관 이지영      지방소득세5팀 표지영      세무2과장 김광수      기획경제국장 10/21 김용운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36213 ( ) 접수 ( )  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  
 전화 02-3423-5753 /전송 02-3423-8818 / zzi0z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